

肅宗代 科文의 변화 양상과 당대 문인의 시각*

박선이**

【목차】

1. 들어가며
2. 肅宗代 科文의 변화 양상
3. 肅宗代 科文의 주요 논란과 쟁점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숙종대 科文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科文에서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례를 고찰하였다. 숙종대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은 적지 않지만, 당대 科文 및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주요 논란과 쟁점은 크게 科文의 체제와 격식·科文의 용어 사용·科文의 표절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숙종대 이전에도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지키지 않은 試券이 科場에서 제출되고 합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었으나 명확한 규범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숙종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었다. 다만, 숙종대에는 이전과 달리 科文의 체제와 격식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여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지키지 않은 試券이 합격한 경우 해당 試券을 제출한 응시자를 削科하고 試官을 파직하는 등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다음으로 숙종 이전 시기에도 科文에서 『老子』·『莊子』·佛經 등 성리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異端書의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특히 숙종대에는 科文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금기사항을 점차 확대하여 語錄과 稗官小品을 비롯한 붕당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항을 『科擧事目』에 명시하여 규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숙종대에는 親臨試의 잦은 시행으로 科表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자 科表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5865).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표절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표절을 통해 科表를 손쉽게 작성하는 행태가 만연하였으며 실제 科場에서도 표절한 科表가 합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결국에는 영조대에 이르러서도 科文 표절과 관련한 문제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주제어: 肅宗, 科擧, 科文, 科文體, 程式.

1. 들어가며

이 글은 숙종대 科文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숙종대 科文에서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안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과거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당대 문인 관료들이 과연 科文의 문체 변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이후로 이전 시기보다 과거가 확대 시행되면서 과거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科弊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¹⁾ 숙종대에는 科場의 운영, 試官과 응시자의 관리, 試券의 작성과 채점의 문제와 관련한 여러 科弊가 끊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조선 초기부터 經學과 時務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된 과거제는 점차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갔다. 특히 과거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科文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단이 드러났는데, 응시자들이 격식과 정해진 文體에 위배되는 科文을 구사하여 科文의 程式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숙종대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科擧事目』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거나 科文의 程式에 위배되는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를 처벌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문제점과

1) 17세기 과거제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숙종대 이후 科弊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89~127면에 자세하다.

폐단은 영조대를 거쳐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정조대에 문체정책을 시행하게 된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 숙종대 科文의 변화 양상과 科文의 程式을 정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숙종 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고, 영조와 정조대까지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였다.

이 논문에서 특히 숙종대 科文의 변화 양상과 科文과 관련한 주요 논란과 쟁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먼저 이전 시기와 비교해볼 때 숙종대에 科文의 문체 변화와 관련한 논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科文의 문체 변화와 관련된 실제 문제와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한 당대 문인들의 시각을 면밀히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숙종대 科文의 문체 변화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인식과 시각, 科文의 程式을 정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후 영조와 정조대에 이전 숙종 시기 科文과 관련한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통시적으로 파악하여 조선후기 科文의 변화 양상과 科文과 관련한 주요 논란과 쟁점의 흐름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科文에 대한 연구는 이병혁의 詩·賦·表·策을 중심으로 한 科文 전반에 대한 형식적 특징과 의의를 규명한 연구²⁾를 시작으로 科文의 각 문체 형식과 역사적 의의를 규명한 개별 연구³⁾가 이루어졌다.

2) 李秉燦, 「한국과문연구-詩·賦를 중심으로-」, 『동양학』 16-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86;

李秉燦, 「과문의 형식고(II)-表·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 동양한문학회, 1987.

3) 강석중, 「科賦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김광년,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박재경, 「조선시대 策文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윤선영,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이상욱, 「조선 과체시(科體詩)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조선 과문(科文)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大東漢文學』 53, 대동한문학회, 2017; 「조선 후기 대책(對策) 형식의 역사적 추이」,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장유승, 「科詩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大東漢文學』 39, 대동

이와 함께 실제 과거 시험장에서 제출되었거나 응시자들이 科文 학습을 위해 참고했던 科文 자료를 選集한 科文集에 대한 연구,⁴⁾ 科文에 사용된 특정 題材를 통해 科文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⁵⁾ 科文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특정 문인의 科文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검토한 연구,⁶⁾ 조선 중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과의 관련성을 주목한 연구⁷⁾ 등 다양한 시각에서 科文을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文風과 과거 제도의 흐름 속에서 科文의 문체 변화와 그 양상을 조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면서 정조대에 시행된 문체정책 당시의 문풍의 변화를 검토한 연구⁸⁾, 숙종·영조대 과거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응시자들의 科文 학습 풍조와 科文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 연구⁹⁾가 이루어져 숙종~정조 연간의 科文의 문체 변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科文의 변화에 대한 논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숙종대 科文의 문체 변화 양상과 실제 숙종 당대에 科文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연구가

한문학회, 2013; 최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책문준적(策文準的)』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39, 동방한문학회, 2009; 황만기, 「科試 箴銘頌의 형식과 문체적 특성」,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 4) 김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2021;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KC』 20,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0; 박현순, 「조선후기 科文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83, 한국한문학회, 2021.
- 5) 김광년, 「조선 시대 怪異, 災變 관련 科文 研究」, 『고전과 해석』 38, 고전한문학회, 2022; 조혁상, 「조선 후기 刀劍 素材 科學 答案 사례에 대한-考察-劍策問 과 劍對策文 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83, 동방한문학회, 2020.
- 6) 이미진, 「雪峯 姜栢年의 表를 통해 본 조선시대 月課 창작의 일단면」, 『고전과 해석』 36, 고전한문학회, 2022; 이상욱,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과시(科詩) 고찰-17세기 조선 과시(科詩)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 7) 안세현, 「조선중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 『대동문화연구』 74, 대동한문학회, 2011.
- 8) 김성진, 「正祖年間 科文의 文體變化와 文體反正」, 『韓國漢文學研究』 16, 한국한문학회, 1993.
- 9) 박선이, 「肅宗·英祖代 科學制와 科文의 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韓國漢文學研究』 83, 한국한문학회, 2021.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科文의 변화 양상을 살핀 후에 조선 후기 과거제의 제도 운영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肅宗代 科文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¹⁰⁾ 이와 함께 『承政院日記』와 『朝鮮王朝實錄』 등 관찬 역사서에 수록된 숙종대 기사 가운데 숙종대 科文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대 문인들이 견지하였던 科文의 문체 변화에 대한 시각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2. 肅宗代 科文의 변화 양상

주지하다시피 科文은 科場에서 출제된 시험 과목의 문체를 뜻한다. 科文의 범주에는 科場에서 출제된 시험 과목 뿐 아니라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도 포함된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는 疑, 義, 論, 詩, 賦, 制, 詔, 頌, 銘, 箴, 記, 表, 箋, 策 14가지 문체가 출제되었다.¹¹⁾ 이 가운데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과거시험에서 주로 출제되었던 문체는 ‘科文六體’라고도 일컬어지는 詩, 賦, 表, 策, 疑, 義 6가지이다.

科文六體 중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科文의 변화 및 폐단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언급되거나 논란이 되었던 문체는 詩, 賦, 表, 策 4가지이다.¹²⁾ 疑와 義는 生員試의 初·覆試, 式年試와 增廣試의 初·覆試에서 출제된 문체로, 製述 시험이지만 응시자가 四書五經에 대한 기본 소양을

10) 필자는 선행연구 「肅宗·英祖代 科擧制와 科文의 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에서 숙종·영조대 科文의 程式과 文體에 관한 논의와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고찰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숙종대에 집중하여 당대 科文의 범주에서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숙종대에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이 양산된 원인을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11) 『經國大典』 「禮典·諸科」

12) 이상욱, 앞의 논문, 2015, 10면 참조.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문체와 관련한 논란보다는 응시자가 작성한 試券의 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科文의 변화 및 폐단과 관련하여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던 詩, 賦, 表, 策을 중심으로 科文의 변화 양상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肅宗代에 科文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科詩, 科賦, 科表, 科策은 조선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문체로서의 詩, 賦, 表, 策에 가까웠다. 조선 초기의 科詩와 科賦는 일반문체로서의 배율과 고시, 율부와 고부 등과 형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科表와 科策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 초기는 科表의 형식은 평측법과 발어사 구사 방법 등에 중국 宋代의 表文을 典範으로 삼고 있었다. 조선 초기의 科策의 경우, 科策 중에서도 殿策은 기본적으로 일반문체로서의 對策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 초기의 殿策은 질문된 사안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락 구성 방식은 중국 역대 왕조의 殿試에서 시험된 制策과 그 형식이 대략 같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正祖代 이전 科詩, 科賦, 科表, 科策의 형식은 조선 초기와 상당히 다른 別格의 문체로 바뀌게 되었다. 科詩, 科賦, 科表는 파제·포서·회제·회하와 같은 특유의 절구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科策은 執策과 殿策 모두에 허두·중두·축조·당금·설폐·구폐·편종이라는 기본 구성이 적용되었다.¹³⁾

科文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16세기 중반 이후로 科詩, 科賦, 科表, 科策이 일반문체로서의 詩, 賦, 表, 策과 달라졌으며, 17세기 말을 기준으로 각 科文마다 작품의 길이, 장단구의 조합, 세부 문체별 발어사의 위치 및 종류가 정해지는 등 특유의 程式이 형성되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程式이 고착화되고 투식화된 것으로 보았다.¹⁴⁾ 그렇다면

13) 이상욱, 앞의 논문, 2015, 189~190면 발췌 요약.

14) 이상욱, 앞의 논문, 2015; 이상욱, 앞의 논문, 2017; 윤재환, 「論難과 筆禍를 통해

科文이 17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이전 시대의 科文의 문체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과거 제도 운영 과정의 변화 및 과거 제도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세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과거의 시행 횟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교적 유생들이 응시하기 용이한 增廣試나 庭試, 春塘臺試가 자주 시행되었다. 增廣試, 庭試, 春塘臺試 모두 여러 단계를 거치는 別試와 式年試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였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험을 시행할 수 있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增廣試, 庭試, 春塘臺試는 親臨試로 한 문제가 출제되고 한나절의 시험으로 급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서 17세기 이후로 과거에 응시하는 응시자가 급증하게 되었다.¹⁵⁾

특히 숙종대 이후 과거가 더욱 자주 시행되고 그에 따라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제자의 지역적 편중 현상, 응시자 간 경쟁의 심화와 科場 관리의 부실 등 科弊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科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증가하게 되었다.¹⁶⁾ 이는 과거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함께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 역시 숙종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¹⁷⁾ 이는 『肅宗實錄』과 『承政院日記』 숙종대 기사를 통해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숙종대 科文의 문체 관련한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다룬 대표적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선 시대의 策文-朝鮮王朝實錄 속 策文 論難과 筆禍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68, 한국한문학회, 2017.

15) 박현순, 앞의 책, 2014, 76~87면 참조.

16) 박현순, 앞의 책, 2014, 132면 참조.

17) 김경남,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 『한민족어문학』 83, 한민족어문학회, 2019, 217면.

知經筵 南九萬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試官들 사이에서 응시자들의 글을 보았는데 文體가 전에 비해 크게 변하였습니다. 보통 쓰는 文字들을 기필코 新奇하게 쓰려고 애써서 ‘天淵’이라 쓸 말을 바꾸어 ‘星淵’이라 하였으니, 이는 별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 ‘末世’는 바꾸어 ‘亥世’라 하였으니, 亥가 地支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繼此以後’는 바꾸어서 ‘胤茲以裔’라 하고, ‘恭惟’는 바꾸어 ‘莊惟’라 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글자와 궁벽한 말로 문장을 엮어 만들어, 반드시 남들로 하여금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사이에는 대체로 많은 語錄을 섞어 쓰니, 常規에서 벗어난 기괴함을 따르려는 습성은 진실로 매우 놀랄 일입니다. 지난날에 姜弼周가 어록을 對策文에 써서 과거에 올랐고, 근래에 趙宗著도 科製에 奇僻한 말들을 즐겨 써서 여러 차례 높은 등위에 들었습니다. 찡그리는 것을 본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文體의 變易은 진실로 세상의 盛衰와 관계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體裁는 통렬히 배척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이 뜻을 中外에 알리시어 일체를 금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성상이 該曹에 명하여 科學事目에 넣어서 중외에 반포하게 하였다.¹⁸⁾

위의 글에서 南九萬은 科場에서 응시자들이 작성한 試券의 문체, 즉 科文의 문체가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응시자들이 科文에서 어려운 글자와 奇僻한 용어로 章句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語錄을 섞어 쓰기도 하는데, 이는 反常趨怪의 행태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科文의 문체를 사용한 응시자들이 과거에서 실제 높은 등위에 들었던 실례를 들어 이러한 행태를 일절 금지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南九萬은 科文 문체의 變易은 곧 세상의 盛衰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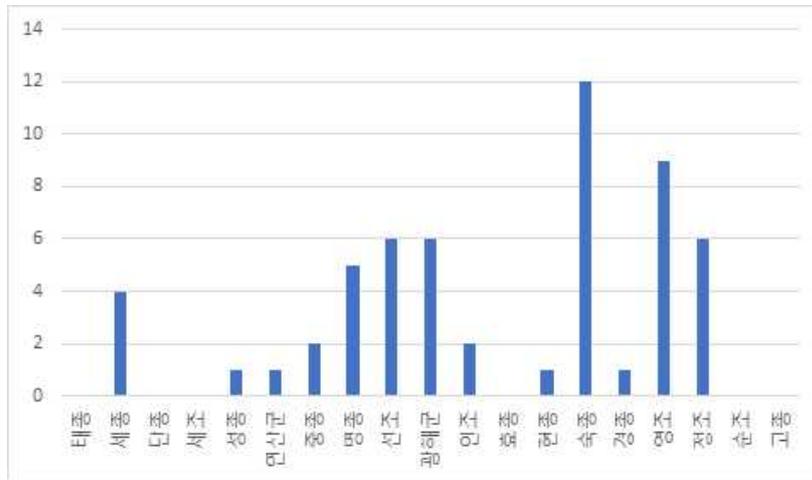
18) 『숙종실록』 숙종 8년(1682) 11월 25일 기사, “知經筵南九萬曰‘臣頃忝試官, 見學子之文, 則文體比前大變. 凡例用文字, 必務爲新奇. 若云天淵則變曰星淵, 以星之在天也, 末世則變曰亥世, 以亥居十二支之末也, 繼此以後, 則變曰胤茲以裔, 恭惟則變曰莊惟. 且以險字僻語, 綴成章句, 必欲使人不可解見. 又於其間, 多以語錄攙入, 反常趨怪之習, 誠甚可駭. 向者姜弼周用語錄於對策而登第, 近日趙宗著亦於科製, 好用奇僻之語, 屢居高等, 效顰者漸多, 以致如此. 文體變易, 實關世道之盛衰. 如此體裁, 不可不痛斥. 請以此意, 知委中外, 使之一切禁斷.’ 上命該曹, 添入科學事目, 頒布中外.”

대해 숙종은 南九萬이 간언한 科文 문체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科擧事目』에 해당 조항을 마련하여 반포하기까지 하였다.

南九萬이 科文의 문체 변화와 당시 科文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은 1682년(숙종8)년의 일로, 그 당시 이미 南九萬을 비롯한 당대 문인 관료들의 科文의 문체 변화 및 당시 科文의 문제점과 科弊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으며, 숙종 역시 이 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을까? 이에 대해서는 숙종대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주요 논란과 쟁점이 된 구체적인 사안들과 함께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肅宗代 科文의 주요 논란과 쟁점

조선시대에 과거가 시행된 이후로 科文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본고에서는 과거 시험장에서 출제된 시험 과목의 문체이자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해당하는 科文과 관련한 논란과 문제점에 국한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朝鮮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 등 관찬 역사서에서 科文과 관련하여 빈번히 언급되는 내용은 ‘程式의 위배’와 ‘違格’에 관한 문제이다. 科文의 程式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에서 출제된 시험 과목의 각 문체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격식과 체제를 뜻한다. 이러한 程式을 어기는 違格은 科文에서 갖추어야 할 문체의 격식을 어긴 경우, 科文에서 금기시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이전 시대 문인의 科文을 그대로 답습하여 표절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科文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란은 숙종대 뿐만 아니라 과거가 시행된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조선 후기 특히 숙종대에 이르러 그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된 科文의 문체 논란과 관련한 기사의 빈도수를 역대 왕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朝鮮王朝實錄』 수록 역대 왕조별 科文의 문체 논란과 관련한 기사의 빈도수¹⁹⁾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숙종대에는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숙종대에는 科文의 문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논란이 되었을까? 다음의 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獻納 金弘楨이 아뢰기를 “(...) 沈垞은 重九日에 시행된 節日製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이 그때 마침 臺閣에 몸담고 있으면서 절일제에 참여하였는데, 放榜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신 역시 沈垞이 書題에 글자를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科場에서는 시험이 끝난 후에 文字에 병폐가 많다는 점을 들어 비방하기도 하고, 對偶가 정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흥을 보기도 하며, 科式에 오류를 범하거나 科式을 어기는 자도 있으며, 심지어 답안 전체를 누락하거나 1편을 비워두는 경우가 있으니, 또 선비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放榜한 후에 합격 여부를 거론한 예는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科次할 때 답안의 좋고 나쁨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放榜한 이후에 削科하여 進退를 결정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 뒷날의 끝없는 폐단을 야기시켜서가 아니겠습니까?”²⁰⁾

19) 『승정원일기』 숙종대 기사에도 科文의 문체 논란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인조 이전의 일기는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전 시대와의 비교가 어렵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20) 『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6) 10월 7일 기사, “獻納金弘楨啓曰 ‘(...) 沈垞入格之製, 在於重九, 而臣於伊時, 適忝臺閣節製, 榜出既久之後, 臣亦追聞其書題落字之事, 而凡科場事

위의 기사는 1697년(숙종23)에 金弘楨이 숙종에게 올린 啓辭이다. 沈垸이 그해 9월 9일에 시행된 절일제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直赴殿試의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沈垸이 작성한 試券의 격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直赴殿試 자격을 취소하고 削科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또 그해 9월 26일에 시행된 庭試에서 ‘擬蜀漢羣臣賀卽皇帝位以諸葛亮爲丞相’이라는 表題가 출제되었는데,²¹⁾ 해당 시험에서 柳鳳輝가 쓴 科表가 科表의 기본 격식과 체제인 對偶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科表에 사용한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柳鳳輝의 이름을 削科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과거시험에 합격하였지만 결국 削科의 명이 내려진 沈垸과 柳鳳輝 두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두고 조정에서는 放榜 후 削科하는 조치는 지나친 처벌이라는 견해와 科文의 정식을 지키지 않은 試券에 대한 削科는 科場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는 두 견해로 나뉘었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金弘楨은 放榜 후에 합격자를 削科하는 조치는 지나친 처벌이라는 견해를 내세우며 위의 啓辭를 올렸다. 이 啓辭를 통해 放榜 후 削科와 관련한 문제 이외에도 숙종대에 科文을 작성할 때 용어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 科文에서 각 문체가 갖추어야 할 격식을 지키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격식을 어기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숙종대 科文의 격식 및 문체와 관련한 논란은 적지 않지만 『肅宗實錄』과 『承政院日記』를 살펴보면 크게 科文의 체제와 격식과 관련한 문제, 응시자가 試券을 작성할 때 사용한 科文의 용어와 관련한 문제, 科文 표절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래에서는

畢之後，或因文字多病而毀之，或因對偶不精而短之，或有謬違科白者，甚至有全勿脫落，一篇空疎，則且爲士子輩訾笑之資，而未聞有榜出後追後學論者，豈不以科次之際，惟當以利病而立落，放榜之後，不當以捐擯而進退，以啓後日無窮之弊哉？”

2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國朝榜目』[K2-3538]; 『丁丑庭試文武科榜目』[B13LB-26].

22) 『숙종실록』 숙종 23년(1696) 10월 12일 기사.

『肅宗實錄』과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숙종대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기사를 바탕으로 당시 科文의 문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1) 科文의 체제와 격식과 관련한 문제

科文의 체제와 격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응시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었지만 과거가 시행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비단 숙종대 뿐 아니라 숙종 이전 시기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드물지 않게 보인다. 숙종 시기에 발생한 科文의 체제와 격식과 관련한 논란을 살피기에 앞서 가장 근접한 시기인 현종대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자.

大司諫 南二星이 사직 상소를 통해 과거와 관련한 일이 공정하지 못한 폐단을 극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번 殿試의 합격자 李聘命의 對策 가운데 中頭, 當今, 篇終 세 단락에 ‘聖策’ 위에 모두 ‘伏讀’ 두 글자가 누락 되었습니다. 試官들이 李聘命의 對策을 합격시키고자 하였으나 격식에 어긋나는 점을 의심하였는데, 試官 李元禎이 자신이 과거시험을 보았을 때의 일로 증명하자 여러 의논이 비로소 결정되어 李聘命이 마침내 합격하였습니다.”²³⁾

위의 상소는 1671년(현종11)에 南二星(1625~1683)이 올린 사직 상소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大司諫이었던 南二星은 1670년(현종11) 11월 1일에 시행된 別試의 殿試에서 이담명이 제출한 對策이 對策의 구성 항목 중 中頭·當今·篇終 세 단락에서 ‘伏讀’ 두 글자를 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試官들이 합격시킨 일을 지적하였다. 또 해당 시험에는

23) 『현종실록』 현종 11년(1670) 11월 13일 기사, “大司諫南二星因辭疏, 極陳科事不公之弊, 有曰‘今殿試入格人李聘命對策中, 中頭與當今篇終三處聖策之上, 皆落伏讀二字. 諸試官欲取其文, 而疑其違格, 試官李元禎, 以自己做業時事證之, 諸議始定, 聘命終至入格.’”

李聃命의 아버지 李元禎이 讀卷官으로 참여하였는데,²⁴⁾ 試官들이 對策의 격식을 어긴 李聃命의 답안을 합격시키기를 주저하자 李元禎이 試官들을 설득하여 李聃命을 합격시키는 바람에 해당 시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당시 조정의 논의는 李聃命의 對策을 두고 남이성처럼 과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李聃命을 削科해야 한다는 견해,²⁵⁾ 그리고 李聃命의 對策에 ‘雙擊詭讀’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격식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격식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일로 인해 李聃命을 차석에 두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²⁶⁾로 극명하게 구분되었다. 李聃命의 對策으로 인한 논란은 다음해까지 지속되었으나 결국 李聃命은 削科되지 않고 乙科 1위[亞元]로 합격하였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응시자들이 對策을 작성할 때 李聃命처럼 策題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투어인 ‘臣伏讀聖策’의 일부 글자를 누락 하는 등 對策의 격식과 체제를 어기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이전 시기에도 李聃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科文의 체제와 격식에 어긋나도 무리하게 합격을 시켜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科文의 격식을 어기고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나 해당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에게 주의만 주고 그친 경우,²⁷⁾ 장원으로 합격시키려 하였으나 科文의 격식을 어겨서 차석으로 합격시킨 경우²⁸⁾도 있었다.

응시자가 작성한 科文이 체제와 격식에 어긋났음에도 합격을 시켜 논란이 될 경우, 합격자를 削科하기도 하였고, 위의 사례처럼 削科하지

2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25) 南九萬, 〈叔父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同知成均館事公行狀〉, 『藥泉集』 권26, 『한국문집총간』 132, 407면.

26) 『현종실록』 현종 11년 11월 14일 기사.

27) 宋時烈, 〈澤堂李公謚狀〉, 『宋子大全』 권203, 『한국문집총간』 114, 506면, “有學子崔煜對策, 頭詞悖理而高占, 公榜示館學以警飭之.”

28) 尹拯, 〈漢城府左尹贈議政府左參贊炭翁先生權公行狀【甲寅】〉, 『明齋遺稿』 권44, 『한국문집총간』 136, 424면, “嘗於漢城試對策, 極論治化之道, 趙文孝公翼, 爲考官, 以爲決非俗儒, 欲置之榜首, 有參考官, 以文字有違式處, 屈置第二.”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科文의 체제와 격식에 어긋났다고 해서 반드시 응시자를 削科시킨 것이 아니라 응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해당 응시자를 차석으로 합격시키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科文의 체제와 격식에 어긋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조치와 처분이 명확한 규범으로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후 숙종대까지도 科文의 체제와 격식과 관련한 문제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式年 文科에서李克亨 등 38인을 뽑았다. 讀券官 南九萬이 응시자 田有攻의 對策이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과거에 응시하게 하도록 청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후 田有攻이 병으로 죽어 응시하지 못했다.²⁹⁾

위의 기사는 1687년(숙종 13) 10월 17일에 시행된 式年試의 급제자인 田有攻이 제출한 對策이 체제와 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시 讀券官이었던 南九萬이 田有攻을 다음에 시행되는 과거에 응시하도록 숙종에게 청하였지만, 田有攻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다음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國朝文科榜目』에는 해당 시험의 급제자가 39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장서각본 『國朝榜目』에는 급제자 중 1인의 문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削科되었다는 기록이 있고,³⁰⁾ 『肅宗實錄』에李克亨 등 38인을 뽑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결국 田有攻은 削科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대에도 여전히 科文의 체제와 격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응시자를 削科시켜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숙종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科文의 체제와 격식의 준수 여부를 더욱 엄정한 사안으로

29) 『숙종실록』 숙종 13년 10월 17일 기사, “式年文科, 取李克亨等三十八人, 讀券官南九萬, 以舉人田有功對策, 不成體式, 請付後科, 上允之. 後有功病死, 不得赴.” 윤재환, 앞의 논문, 2017, 86면 주석 16번 재인용.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國朝榜目』[K2-3538].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710년(숙종 36)에 일어났던 尹鳳九(1681~1767)의 試券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監試 1소의 終場에서 수석을 차지한 尹鳳九는 試文이 모두 科式에서 벗어나 보통 격식과 크게 달랐으며, 첫머리에 심지어 ‘再拜敬悉’ 등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前古에 없던 문체인데,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가 도리어 높은 등급에 두었으니, 문체를 바로잡아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감시 1소의 종장에서 수석을 차지한 윤봉구를 특별히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試官을 모두 파직하소서.³¹⁾

위의 기사는 1710년(숙종 36)에 洪禹寧(1660~1717)이 숙종에게 올린 啓辭이다. 당시 尹鳳九가 監試 1소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가 작성한 科文의 격식과 체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사간원에서 尹鳳九가 작성한 科文이 科文의 격식과 체제에서 전부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첫머리에 ‘再拜敬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尹鳳九를 削科하고 해당 試官의 파직하여 科文의 程式을 바로잡기를 청하였다. 며칠 후에 숙종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尹鳳九의 科文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는데, 숙종과 대신들은 사간원에서 논핵한 대로 尹鳳九의 試券이 科文의 程式에 모두 위배되고, ‘再拜敬悉’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語錄體를 많이 사용한 점은 『科擧事目』의 조항에 위배되므로 尹鳳九를 削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尹鳳九의 試券이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科文의 격식과 체제를 얼마나 벗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숙종과 신하들이 문제 삼았던

31)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4월 29일 기사, “正言洪禹寧啓曰 ‘(…) 一代文體之正變, 都在 試院之所尙, 掌試之任, 可謂重矣. 近來試官, 全不選擇, 前後考取, 極其雜亂. 今番監試一所 終場居首尹鳳九試文, 全脫科式, 大異常格. 篇首至有再拜敬悉等語, 此實前古所未有之文體. 掌試之官, 不但不爲黜去, 乃反置諸高等, 瞻聆俱駭, 人言藉藉. 此而置之, 不惟程式之漸乖, 大非正文體, 杜後弊之道. 請監試一所終場居首尹鳳九, 特爲拔去, 當該試官, 竝命罷職.’” 해당 내용은 『숙종실록』 숙종 36년(1710) 4월 29일 기사에도 수록되어 있다.

‘再拜敬悉’·‘愚再拜’는 간찰에서 사용되는 투식어이다. 科文의 程式에 위배되고 격식과 체제를 지키지 않은 試券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용납될 수가 없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시험의 試官은 파직되었고, 尹鳳九는 削科되었다.³²⁾

위의 사실로 볼 때 숙종대에도 이전 시기처럼 科文의 격식과 체제를 지키지 않은 試券이 科場에서 제출되었고 해당 응시자가 높은 등수로 합격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다만 숙종대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科文의 격식과 체제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합격자를 削科하는 동시에 해당 試官은 파직하는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이는 숙종대에 科文의 격식과 체제에 관련한 문제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숙종대 이후 영·정조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 科文의 용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

숙종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문제는 科文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련된 문제였다. 당시 응시자들이 科文을 작성할 때 『老子』·『莊子』·佛經과 같이 성리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異端書의 용어를 인용하거나 小說體의 문장을 활용하는 경우, 어록체의 용어와 문장을 구사하거나 당파를 언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많은 논란이 되었다. 그로 인해 1682년(숙종8)에는 科文에서 어록체를 쓰거나 기이하고 궁벽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격식에 맞지 않는 문체를 쓰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³³⁾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科文에서 금기시하는 용어를

32) 박선이, 앞의 논문, 2022, 109~110면.

33) 『典錄通考』 「禮典·科學」, “科文用語錄及奇僻之語·變易文體者, 一切禁斷. 【康熙壬戌承傳.】”

사용하는 행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1705년(숙종 31)에 閔鎮遠(1664~1736)이 올린 啓辭에서 확인할 수 있다.

參贊官 閔鎮遠이 아뢰기를, “科場의 글은 본래 程式이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정식에 위배되면 有司가 내치는 것이 준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文體가 점차 변하여 程式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南九萬이 대제학이 되었을 때 경연에서 進達하여 말하기를, ‘疑가 論같고 賦가 詩같으니, 거둬 타일러서 엄하게 금지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때 監試 初試에 入格한 試券 가운데에는 賦의 첫머리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또 보지 못했는가?’ 하는 등의 문자가 있었으니, 疑의 첫머리에 ‘언제 일찍이 보았는가?’ 하는 문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監試 覆試의 1소의 疑題에 ‘聖人の 사람을 보는 것이 觀相人の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東萊博議』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疑題에 있어 外家文字를 사용한 것은 바로 독창적인 의견에 속하는 것으로서 程式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聖人和 觀相人을 가지고 우열을 비교한 것은 성인을 존경하는 도리에 모자람이 있는 듯하니, 이미 매우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入格한 글의 첫머리에 『管子』 「人相篇」을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四書疑는 外家の 文字를 인용한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높은 등급의 점수에 배치시켰으니, 이전의 文體가 반드시 장차 크게 변질될 것이므로, 이는 관련된 바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다음부터는 疑題와 入格한 글에 있어서 外家文字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科場의 事目에 첨가해 넣어서 이를 定式으로 삼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⁴⁾

34) 『숙종실록』 숙종 31년(1705) 4월 2일 기사, “參贊官閔鎮遠啓曰‘科場之文, 自有程式, 少違程式, 有司黜之, 例也. 近來文體漸變, 不有程式. 昔年南九萬, 爲大提學時, 陳達於筵中, 以爲疑似論賦似詩, 申飭嚴禁. 蓋其時監試初試入格試券中, 賦初頭, 有君不見又不見等文字, 疑初頭有曷嘗觀夫文字故也. 今番監試覆試一所疑題, 有曰聖人之相人, 與相人之相人同歟, 異歟? 此雖曰出自『東萊博議』, 而疑題用外家文字, 係是創見, 有非程式. 而況以聖人與相人, 比較優劣, 似有欠於尊畏聖人之道, 已極未安. 且其優等入格之文起頭, 引用『管子』 「人相篇」云. 四書疑之引用外家文字, 曾所未見, 而置之高等, 前頭文體, 必將大變, 所關非細. 此後則疑題及入格之文, 勿用外家文字事, 添入於科場事目, 以爲定式施行之地何如?’ 上曰‘所達甚是. 依此爲之.’ 鎮遠言‘頃日御題, 有切願寧陵聖志遵之語, 臣民孰不感悅? 孝廟大志炳然, 而以內修自強爲本, 孜孜恤民, 可法者非一. 宜取覽其時日記, 一一遵行.’” 박선이, 앞의 논문, 2021, 131면 주석 23번 재인용.

위의 글에서 閔鎭遠은 당대 科文의 문체 변화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논하였다. 민진원은 1682년(숙종8) 당시 大提學이었던 南九萬이 당대 科文의 문체 변화 실태에 대해 지적한 이후로도 여전히 응시자들이 科文의 程式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科文을 작성하는 세태를 지적하며 科文의 程式을 무시하고 科文에서 금기시하는 용어를 사용한 응시자의 科文이 높은 등수로 합격하는 현실을 극렬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科文을 작성할 때 성리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서적의 용어를 금지하는 조항을 『科學事目』에 넣어 科文의 程式을 무너트리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진원의 건의 이후로 『科學事目』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科文에서 금기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랐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는 1710년(숙종 36)에 시행된 增廣試 文科의 합격자가 제출한 試券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司諫院에서 논하기를, “科場의 文字는 『老子』·『莊子』와 異端 등의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禁令이 있는데, 이번 2소에서 入格한 學子의 試券 가운데에는 佛經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심지어는 ‘極樂世界’와 ‘八百羅漢’ 따위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소 응시자의 시권에는 西浦稗說이 앞머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西浦는 바로 근래 宰臣의 號이고 稗說이란 곧 漫筆한 小說의 종류인데, 이러한 격식 외에 淆雜한 글을 더욱 통렬히 금지하지 않는다면, 科場을 엄중히 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該曹로 하여금 文科 1소와 2소의 入格試券을 거두어 모아 서로 상고하여 빼버리도록 하고, 해당 試官은 모두 從重推考하도록 명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 의견을 따라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일을 該曹로 하여금 稟處하도록 하였다. 이후 예조에서 覆奏하여 합격자인 崔道文·陸鴻運 등을 모두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³⁵⁾

35) 『숙종실록』 숙종 36년(1710) 5월 21일 기사, “諫院論科場文字, 不使用老·莊異端等說, 明有禁令, 而今番二所入格學子試券中, 多有佛語, 至有極樂世界·八百羅漢等語, 而一所入格學子試券中, 有以西浦稗說, 爲頭說云. 西浦, 卽近來宰臣之號, 而稗說, 卽漫筆小說之類也, 如許格外淆雜之文, 若不痛加禁斷, 則無以嚴科場而杜後弊. 請令該曹, 收聚文科一·二所入格試券, 相考拔去, 當該試官, 並命從重推考.” 上從之, 拔去事, 令該曹稟處. 是後, 禮曹覆奏,

1710년(숙종36)에 增廣試 文科 初試와 覆試가 시행된 이후, 司諫院에서 『老子』나 『莊子』와 佛經과 같이 異端에 속하는 서적이나 사상의 용어를 科文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科擧事目』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試官들이 조항에 위배되는 試卷들을 빼버리지 않고 합격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문과 1소와 2소에서 합격한 시권을 모조리 거두어 들여 다시 살펴보았는데, 당시 합격자 가운데 崔道文과 陸鴻運 두 사람이 增廣試 終場에서 작성한 시권에서 崔道文의 對策에서는 金萬重(1637~1692)의 『西浦漫筆』에 나오는 용어를 활용하였으며, 陸鴻運의 對策에서는 ‘極樂世界’과 ‘八百羅漢’과 같이 불경의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³⁶⁾ 그리고 이와같이 異端에 속하는 서적이나 사상의 용어를 응시자들이 시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해당 시권을 합격시킨 試官을 엄중히 다스려 科場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崔道文과 陸鴻運 두 사람을 削科하는 조치를 내렸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科文에서 稗官小品體를 사용하고, 이를 금기시하던 일은 일반적으로 정조대 科文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한 문제로 알려져 있으나, 숙종대에도 이미 科文에서 西浦稗說을 인용하는 등 이와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科文의 용어 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응시자가 科文에서 당파와 관련된 용어와 문장을 구사하여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1682년(숙종8)에

入格人崔道文·陸鴻運等, 竝拔去.”

36) 『승정원일기』 숙종 36년(1710) 5월 21일 기사, “鄭來祥, 以禮曹言啓曰‘以諫院啓辭, 請令該曹收聚一二所入格試券, 相考拔去.’ 措語見上答曰, ‘拔去事, 令該曹稟處矣.’ ‘科場文字, 禁用老·莊異端等說, 明有事目, 試官當依事目黜落, 而反加採取, 誠甚未安. 榜出之後, 追論拔去, 不無後弊, 而既已發覺, 則又不可仍冒, 故一二所入格試券, 分付四館所, 使之一併收聚, 則學子崔道文入格策問試券中, 用西浦稗說, 學子陸鴻運策文試券中, 有極樂世界·八萬羅漢之說. 此兩人納券自首, 所當依臺啓拔去, 其餘入格學子, 或稱試券之送去鄉家, 來納者絕少, 雖加嚴督, 勢難沒數收聚於會試之前, 且念臺啓學論之外, 若干外家說使用之文, 一切窮覈拔去, 多有難處之端, 置而不問, 恐或得宜, 何以爲之? 敢稟.’ 傳曰‘兩人拔去, 其餘置之.’”

있었던 金壽恒(1629~1689)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金壽恒이 또 아뢰기를 “科場의 文字는 본래 程式이 있고, 또 執策과 殿策은 體制에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소 문과 초시에 입격한 응시자인 洪致祥이 제출한 試券의 文字는 措語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한 편의 뜻이 매우 번잡하니, 헤아려 가려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격식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람됨이 망녕됨을 알 수 있으니, 꾸짖기에도 부족합니다. 성상께서 깊이 다스리기에 부족하다고 하신 하교는 참으로 타당하지만, 배척을 당한 사람이 또한 어찌 이 일로 인하여 사직 하여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黨論이 있게 된 이후로 한때의 朝官과 선비 가운데 色目에서 벗어난 자가 드물었는데, 科製文字는 朋黨의 폐단을 언급하고 당파를 깎아 내리거나 칭찬하는 사이에 스스로 그 形迹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試官과 응시자들의 마음가지미 한결같이 공정함에서 나오지 못하면, 입격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말이 있게 되고, 또한 뒷날의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科製에 朋黨을 언급하는 자는 일절 취하지 않는 것이 科場을 엄중하게 하고 폐습을 막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행동은 망녕된 데에서 나온 듯하여 진실로 심하게 꾸짖을 것이 없지만, 科場의 事體는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앞으로는 科製 중에 色目を 언급하는 일을 일절 禁斷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³⁷⁾

당시 領議政이었던 金壽恒은 1682년(숙종8)에 시행된 증광시 문과 초시 1소에서 입격한 洪致祥이 제출한 科文의 문체가 程式에 맞지 않고 격식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色目 즉, 당파나 붕당에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試官들이 합격시켰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黨論이 생긴 뒤로 응시자가 科文을 작성할 때 당파나 붕당을 언급하며 자신의

37) 『승정원일기』 숙종 36년(1710) 3월 29일 기사, “又所啓科場文字, 自有程式, 且執策與殿策, 體制自別, 而今番一所文科初試入格學子洪致祥試券文字, 無論其措語當否, 一篇辭意, 極其冗雜, 宜不知斟酌揀擇, 不但大違式例, 亦可見其人之浮妄, 不足責矣. 自上不足深治之教, 誠爲得當, 而被斥之人, 亦豈有因此辭避之理哉? 但自有黨論以來, 一時朝官士子, 鮮有自脫於色目之外者, 而科製文字, 論及朋黨之弊, 抑揚彼此之際, 或有自露其形迹者. 試官與學子, 其秉心, 或不能一出於公正, 則取舍立落之際, 必致人言, 亦有後弊. 臣意則當以爲科製之語及朋黨者, 一切不取, 庶合於嚴科場杜弊習之道矣.’ 上曰‘此人所爲, 似出於顛妄之致, 固不足深責, 而科場事體, 至嚴且其重, 今後則科製中, 語及色目者, 一切禁斷, 可也.’”

黨色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考試官이 공정하게 시권을 채점하지 않고 자신의 黨色과 부합하다고 해서 해당 科文을 작성한 응시자들 합격시킨다면 앞으로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당파나 붕당에 관한 문장을 언급한 科文은 합격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시권에 당파나 붕당과 관련한 문장을 일절 언급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金壽恒의 건의는 이후 1746년(영조22)에 편찬된 『續大典』에서 ‘대과와 소과에서 작성한 글 중에 黨派를 언급하거나 괴이하고 샛된 표현을 한 것은 뽑지 않는다[大·小科場文字中, 語及色目, 或用奇僻之語者, 勿取.]’라는 조항으로 반영되었다.

숙종대 科文에서 당파나 붕당에 관련한 용어 사용의 문제와 논란은 科文의 程式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老·少 붕당과 관련한 시대적·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금기시되었던 사안으로 보인다. 科文에서 용어의 사용과 관련한 금기사항은 조선 전기에 임금의 이름을 科文에 쓰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³⁸⁾에서 시작하여 선조대에 이르면 『莊子』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³⁹⁾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莊子』 뿐아니라 『老子』와 佛經과 같이 성리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단서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숙종대에 이르면 稗官小品과 당파와 관련한 용어 사용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科文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금기사항이 점차 확대되었다.

3) 科文의 표절과 관련한 문제

조선 초기 과거가 시행될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科文의 표절과 관련한 문제이다. 과거 시행 초기부터 응시자들이 각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38) 『성종실록』 성종 6년(1475) 6월 10일 기사.

39) 『春官志』 권1 「科擧·增廣」, “庚子榜及第李涵用莊語, 特命削科, 由此遂爲成例.”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이전 시대와 당대 문인들의 科文을 그대로 답습하여 표절한 경우가 많았다.⁴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초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科文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반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⁴¹⁾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며, 조선 후기까지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숙종대에 이르면 특히 숙종대 중엽부터 科文 중에서 科表의 표절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親臨試인 調聖試와 春塘臺試를 비롯해 각종 慶事의 명목으로 庭試가 자주 시행되면서 即日放榜하는 시험의 특성상 한 번의 시험으로 실질적인 인재를 가려낼 수 있는 문제라 여겨졌던 科表의 출제 빈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科表가 집중적으로 출제되자 응시자들이 효율적으로 科表를 학습할 수 있는 科表選集과 類抄類 참고서가 활발하게 편찬되었다.⁴²⁾

숙종대 과거에서 科表 위주의 선발방식이 지속되면서 과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인재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응시자들 가운데 類抄類 참고서를 활용하고 科表選集 등 科表 참고서를 표절하여 요행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1694년(숙종20)에 南九萬의 언급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조정처럼 科擧를 자주 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상께서 인재를 널리 뽑는다면 그 가운데 등용할만한 자가 있을 것인데, 이는 진실로 성대한 시대의

40) 『세종실록』 세종 14년(1432) 3월 11일 기사; 『성종실록』 성종 16년(1485) 6월 1일 기사; 『중종실록』 중종 30년(1535) 12월 11일 기사; 31년(1536) 1월 11일 기사; 31년(1536) 2월 6일 기사; 34년(1540) 8월 6일 기사; 『명종실록』 명종 6년(1551) 8월 26일 기사; 6년(1552) 8월 27일 기사; 6년(1552) 9월 4일 기사; 9년(1554) 5월 4일 기사; 11년(1556) 10월 11일 기사; 19년(1564) 2월 6일 기사;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2월 8일 기사; 39년(1606) 12월 8일 기사; 『광해군일기』 광해군 2년(1610) 1월 11일 기사; 3년(1611) 9월 11일 기사; 5년(1613) 4월 11일 기사.

41)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5월 28일 기사.

42) 박현순, 앞의 책, 2014, 79~82면 참조.

아름다운 일이지만 文才가 부족한 것은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 제가 듣자하니 주상께서 四六文을 ... 儒者들은 모두 四六文을 업으로 삼아 문장을 지을 때 표절을 일삼아 비록 講讀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쉽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科擧를 보아 요행으로 합격하기 때문에 실제 문장을 짓는 일에는 힘을 기울이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文才가 완전히 없어진 이유입니다. 주상께서 진실로 科擧를 드물게 시행하시고 인재를 배양하며 四六文을 숭상하지 말고 실제 문장을 숭상하신다면, 인재의 부족을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⁴³⁾

위의 글에서 南九萬은 당대에 과거의 잦은 시행과 四六文 즉 科表의 빈번한 출제로 인해 응시자들이 모두 科表의 학습에 매진하며, 표절과 모방을 일삼아 科表를 손쉽게 작성하는 요령만 터득하여 科表를 완성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에서 요행으로 합격하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한 이후 문인 관료가 되었을 때 실제 科表를 제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응시자들의 그릇된 科表 학습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행과 科表의 출제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南九萬의 건의 이후에도 1697년(숙종23)에 校書校理 李龍徵 등이 당대 과거에서 科表의 빈번한 출제로 표절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과거의 시행 횟수를 줄이고 科表의 출제를 지양할 것을 건의하였다.⁴⁴⁾ 하지만 당대 정치적 상황, 숙종의 四六文에 대한 애호⁴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관련한 문제는 제대로 시정되지 못한 채 숙종 말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43) 『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윤5월 24일 기사, “南九萬曰‘設科之數, 無如今朝, 自上以爲, 廣取人才, 則其中或有可用者, 此則誠聖代之美事, 而文才之乏, 未有甚於今日也. (...) 聞自上惟以四六爲【缺數字】儒者, 皆以四六爲業, 尋章摘句, 剽竊爲事, 雖不習於講讀, 而成篇爲易, 以此觀光, 僥倖而參, 故至於實地之文, 無或有着工者, 此文才之所以絕無也. 自上誠能罕設科擧, 培養其才, 勿以四六爲尙, 以實地之文爲尙, 則可以無乏才之歎矣.’”

44) 『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12월 7일 기사.

45) 이에 대해서는 김광섭, 「17~18세기 ‘려문선집’류의 편찬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하여: 서유체 변려문의 애호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79면에 자세하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正言 柳復明이 상소하기를, “(…) 선비를 시험하는 글은 表文을 우선시합니다. 이 때문에 표절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요행으로 합격하기도 하니, 곧 科場에서 지름길로 삼고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科擧의 시행 횟수가 너무 많아 나이가 젊고 학식이 없는 부류들이 어지럽게 科擧에 응시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科擧를 드물게 시행하고 表文으로 시험하는 방식을 그만둔다면, 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⁴⁶⁾

위의 글은 1718년(숙종44)에 당시 正言이었던 柳復明(1685~1760)이 時弊 20여 조목과 관련하여 올린 상소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복명은 당대 科文의 폐단과 관련한 조목에서 여전히 과거 시행 횟수의 증가와 科表 위주의 선발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과거의 시행 횟수를 줄이고 表文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을 그만둘 것을 건의하였다.⁴⁷⁾

科文과 표절과 관련한 문제는 科表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科體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숙종 시기 이후 영조대에도 科文의 표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尹淳이 말하기를, “추산해보면 10여 년 전에 科擧에 합격한 사람들은 모두 科場에서 문장을 잘 짓는 선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근래에는 선비를 시험 보이는 일이 빈번하여 독서를 일삼는 선비가 없고, 단지 눈앞의 科式 만을 꾸미고 취합하여 점점 이름이 알려진 부류가 모두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는 문학으로 이름난 사람이 없으며, 科場에도 뛰어난 科文 작품이 없습니다. 이는 科擧를 빈번하게 시행한 데에서 비롯되어 科文을 표절하는 행위가 습속을 이루어

46) 『숙종실록』 숙종 44년(1718) 윤8월 3일 기사, “正言柳復明上書, 有曰(…) ‘試士之文, 以表爲先, 故剽竊成篇, 僥倖被選, 便爲科場中捷徑, 而近年以來, 科試太數, 年少學蔑之類, 莫不紛然而應擧. 今若罕設科而寢試表, 則可以矯其弊矣.’” 박선이, 앞의 논문, 2021, 122면 주석 5번 재인용.

47) 박선이, 앞의 논문, 2022, 128면.

그러한 것이니, 조정에서 권장하는 본뜻이 전혀 아닙니다.”⁴⁸⁾

② 左副承旨 李濟가 上疏를 올렸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科場의 글은 본래 程式이 있는데 근래 科儒들은 오로지 表절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鋪敍에서는 반드시 축급함을 요구하며 答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속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을 관장하는 사람이 합격자 선발에만 현혹되어 試券을 빨리 제출하는지 늦게 제출하는지만을 살펴서 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⁴⁹⁾

①은 당시 大提學이었던 尹淳이 당대 과거와 科文 表절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다. 윤순은 과거가 빈번하게 시행됨에 따라 응시자들 사이에서 科文을 表절하고 答습하는 행태가 습속을 이루었으며 결국 이러한 폐단 때문에 科場에서 뛰어난 科文이 제출되지 않고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비판하였다. ②는 李濟가 科文에서 表절만을 일삼는 당시 응시자들의 습속을 비판한 내용이다. 응시자들이 科文의 程式을 지키지 않고 表절로 빠르고 신속하게 科文을 작성하여 試券을 제출하기 때문에 科文의 격식과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의 두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영조대에도 숙종대와 마찬가지로 응시자들 사이에서 科文의 表절과 모방만을 일삼는 행태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문인 관료들의 지속적인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科文의 表절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큰 논란거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3월 13일 기사, “淳(尹淳-인용자)曰 ‘退計十餘年前參試之人, 皆言場屋間有能文之士, 而近來試士頻數, 士無讀書者, 只以目前科白, 粉飾取合, 稍稍知名之類, 舉皆登科. 故世無文學可稱者, 科場亦無絕作, 此由於科試頻數, 剽竊成習而然, 甚非朝家勸獎之本意矣.’”

49) 『영조실록』 10년(1734) 2월 21일 기사, “左副承旨李濟上疏, 略曰 ‘(…) 科場之文, 自有程式, 而近來科儒, 專事剽竊. 鋪敍則必要促急, 製作則惟責神速, 文體不成貌樣, 蓋由掌試者眩於監別, 只觀呈券之早晚, 而取捨故也.’”

4. 나오며

지금까지 숙종대 科文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숙종대 科文에서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례를 고찰해보았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숙종대 科文의 문체 논란이 지니는 의미를 약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숙종대 이후 과거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시행되고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科場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 역시 숙종대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기사에 수록된 숙종대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은 적지 않지만, 당대 科文 및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주요 논란과 쟁점은 크게 科文의 체제와 격식에 관한 문제, 응시자가 試券을 작성할 때 사용한 용어와 관련한 문제, 科文의 표절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科文의 체제와 격식과 관련한 문제는 숙종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가 시행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숙종대 이전에도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지키지 않은 시권이 科場에서 제출되고 합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었으나 명확한 규범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숙종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었다. 다만, 숙종대에는 이전과 달리 科文의 체제와 격식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여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지키지 않은 試券이 합격한 경우 해당 시권을 제출한 응시자를 削科하고 試官을 파직하는 등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다음으로 科文에서 사용한 용어와 관련한 문제와 그에 대한 논란은 숙종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전 시대에도 科文에서 『老子』·『莊子』·佛經 등 성리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異端書의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 숙종대에는 科文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금기사항을 점차

확대하여 語錄과 稗官小品을 비롯한 봉당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항을 『科學事目』에 명시하여 규제하였다.

마지막으로 科文의 표절과 관련한 문제는 科文의 체제와 격식과 관련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거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특히 숙종대에는 謁聖試, 春塘臺試, 庭試 등 親臨試의 잦은 시행으로 科表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자 科表의 표절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표절을 통해 科表를 손쉽게 작성하는 행태가 만연하였으며 실제 科場에서도 표절한 科表가 합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결국에는 영조대에 이르러서도 科文 표절과 관련한 문제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숙종대에 科文의 문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된 원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와 관련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조선 전기부터 답습된 응시자들의 관습적인 科文 학습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作文을 할 때 朱子書의 語錄體와 書簡文에 익숙했던 응시자들의 作文 관습이 科文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시권 가운데 試官의 눈에 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西浦의 소설체와 같은 문장을 구사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숙종대 문인 관료들은 科文의 程式과 격식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科學事目』에 이와 관련한 금지 조항을 마련하여 당대 科文의 격식과 문체 변화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科文의 격식과 문체 변화 역시 개성적이고 신기함을 추구했던 조선 후기 文風의 변화와 연관된 문제였기에 단순히 科文의 정식과 격식을 위배한 응시자를 처벌하는 일시적인 규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숙종대부터 본격화된 老·少 봉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숙종대에는

甲戌換局 이후 老論과 少論간의 갈등 속에서 여러차례 科獄이 발생하였는데, 1699년(숙종25) 증광시에서 비롯된 己卯科獄, 1702년(숙종28) 알성시에서 비롯된 壬午科獄, 1712년(숙종38) 정시에서 비롯된 壬辰科獄 등이다. 科文의 논란과 관련하여 老·少論에 속하는 문인들이 각자의 시각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속하는 당파의 세력과 직결되는 과거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그와 관련된 부정행위와 이러한 부정행위를 반대 당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쟁점화하며 科文의 체제와 격식을 구실로 삼아 이견을 제기하면서 科文의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기본 연구 자료 】

- 南九萬, 『藥泉集』, 『한국문집총간』 132, 민족문화추진회.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14, 민족문화추진회.
 尹 拯, 『明齋遺稿』, 『한국문집총간』 136, 민족문화추진회.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
 조선시대 법령자료(<https://db.history.go.kr/law/>)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 저서 및 논문 】

- 강석중, 「科賦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김 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2021.
 김경남,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 『한민족어문학』 83, 한민족어문학회, 2019.
 김광년,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_____, 「조선 시대 怪異, 災變 관련 科文 研究」, 『고전과 해석』 38, 고전한문학회연구학회, 2022.
 김광섭, 「17~18세기 '려문선집' 류의 편찬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하여: 서유체 변려문의 애호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김성진, 「正祖年間 科文의 文體變化와 文體反正」, 『韓國漢文學研究』 16, 한국한문학회, 1993.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0, 고려대 한국언어문화기술화산연구소, 2020.
 _____, 「肅宗·英祖代 科擧制와 科文의 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韓國漢文學研究』 83, 한국한문학회, 2021.
 _____, 「肅宗-正祖代 科策과 科表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2.
 박재경, 「조선시대 策文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_____, 「조선후기 科文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83, 한국한문학회, 2021.
 안세현, 「조선중기 文風의 변화와 科文」, 『대동문화연구』 74, 대동한문학회, 2011.
 윤선영,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윤재환, 「論難과 筆禍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策文 -朝鮮王朝實錄 속 策文 論難과 筆禍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68, 한국한문학회, 2017.
- 이미진, 「雪峯 姜栢年의 表를 통해 본 조선시대 月課 창작의 일단면」, 『고전과 해석』 36, 고전한문학회, 2022.
- 李秉燦, 「한국과문연구-詩·賦를 중심으로-」, 『동양학』 16-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86.
- _____, 「과문의 형식고(II)-表·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2, 동양한문학회, 1987.
- 이상욱, 「조선 과체시(科體詩)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조선 科文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조선 후기 대책(對策) 형식의 역사적 추이」,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2015.
- _____,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大東漢文學』 53, 대동한문학회, 2017.
- _____,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과시(科詩) 고찰 -17세기 조선 과시(科詩)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 장유승, 「科詩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 정경주,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 조혁상, 「조선 후기 刀劒 素材 科學 答案 사례에 대한 一考察-劒策問과 劒對策文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83, 동방한문학회, 2020.
- 최 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책문준적(策文準的)』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39, 동방한문학회, 2009.
- 황만기, 「科試 箴銘頌의 형식과 문체적 특성」, 『大東漢文學』 39, 대동한문학회, 2013.

논문접수일: 2023.7.31. 심사완료일: 2023.8.26. 게재확정일: 2023.8.31.

【Abstract】

Changes in Gwamun(科文) during King Sukjong's reign and the perspective of Bureaucratic Men of Letters

Park, Seon-yi*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s in Gwamun(科文)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considered major cases that were controversy and controversial issue in Gwamun(科文). Although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over Gwamun(科文)'s style during King Sukjong's reign, the main controversies and issues related to Gwamun(科文) and Gwamun(科文)'s style at the time can be largely summarized as Gwamun(科文)'s system and formality, Gwamun(科文)'s use of terms, and Gwamun(科文)'s plagiarism.

Prior to King Sukjong's era, the issue of Gwamun(科文)'s system and informal sigwon(試券) being submitted and passed at the test site was controversial, but this problem continued during King Sukjong's era because no clear norms were established. However, unlike before, Sukjong University recognized the problem of Gwamun(科文)'s system and formality more seriously, and if Gwamun(科文)'s system and informal sigwon(試券) passed, it canceled the successful candidate who submitted sigwon(試券) and dismissed the official in charge.

Next, even before King Sukjong's era, it was controversial using terms of heresy that deviated from the category of Neo-Confucianism in Gwamun(科文), such as *Laozi*, *Zhuang Zi*, and Buddhist scriptures. In particular,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the taboo on terms and letters used in Gwamun(科文) was gradually expanded to prohibit the use of direct terms related to bungdang, including Analects StyleHumour and PaegwanSopum(稗官小品), and related provisions were stipulated and regulated in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Finally, in the reign of King Sukjong, as the proportion of questions for Gwapyo(科表) increased due to the frequent implementation of chinrimshieexam(親臨試), problems related to plagiarism of Gwapyo(科表) frequently emerged. At that

* Research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

time, the behavior of easily writing Gwapyo(科表) through plagiarism was prevalent, and the problem of plagiarizing Gwapyo(科表) passing in the actual test site occurred, and various alternatives were prepared in the court as a solution, but in the end, problems and controversies related to Gwamun(科文)'s plagiarism continued even in the reign of King Yeongjo.

Keywords: King Suk-jong, Civil Examination, Gwamun (科文),
Gwamunche (科文體), a regular form.